

의안번호	제878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8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최정훈,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결과의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관련부서 : 행정국 회계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하자 검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시설공사에 대해 영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제6조에 따른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검사 이력 입력 및 관리
4.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
5.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 ① 도지사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검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제정 조례안은 기 설치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을 통한 공사 하자관리 지원이 가능하여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